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나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20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4.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 김병욱)

□ 제안이유

-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을 통한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- 가.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
 - 나.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
 - 다.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한시정원 신설

□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- 정원의 총수 : 1,641명 → 1,675명 (증 34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610명 → 1,644명 (증 34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31명 → 31명 (변동 없음)

나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3조 관련 별표 3)

- 정원 총계 : 1,641명 → 1,675명 (증 34명)
- 일반직 계 : 1,636명 → 1,670명 (증 34명)
 - 5급 : 71명 → 72명 (증 1명)
 - 6급 이하 : 1,555명 → 1,588명 (증 33명)

다. '신청사건립추진단' 한시정원의 운영(안 제5조, 별표4)

- 정 원 : 6명(5급 1명, 6급 이하 5명)
- 운영시한 : 2023년 6월 30일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협의사항

- 1) 기획예산과 : 규제심사
- 2) 감사담당관 : 부패영향평가
- 3) 가족정책과 : 성별영향평가

라. 입법예고(2020. 3. 10. ~ 3. 30) 결과 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배금택)

가. 개정 취지

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의 추진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○ [안 제2조] 정원의 총수 조정

- 정원의 총수를 기존 1,641명에서 1,675명으로 34명 증원
- 집행기관의 정원을 1,610명에서 1,644명으로 34명 증원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(변동 없음)

○ [안 제3조 관련 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조정

- 정원 총계를 1,641명에서 1,675명으로 34명 증원
- 일반직 계를 1,636명에서 1,670명으로 34명 증원
 - 5급 71명을 72명으로 1명 증원
 - 6급 이하 1,555명을 1,588명으로 33명 증원

○ [안 제5조 신설] 한시기구의 정원

-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5급 1명, 6급 이하 5명으로 6명 증원
- 운영시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의 추진

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각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기준인건비¹⁾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, 제30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,
-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「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」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 20명,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5명,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담당인력 3명 등 2020년도 우리구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총 28명을 증원하고,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원활한 청사건립을 위해 5급 단장 1명을 비롯한 총 6명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 정원으로 하여 증원하려는 사항임
- 이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비용추계를 살펴보면,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 2.8%를 반영하여 구비예산이 2020년 3억 4,480만 3천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27억 8,703만 2천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1) 기준인건비제: 기존 총액인건비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대신,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4.3.5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여 도입함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과 향후 사업별 적정 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인력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

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6조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,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